

<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>

1. 과세방법

- ▷ 비과세대상과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합산 안됨
- ▷ 위 외의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이 종합과세여부 판단

구분	이자	배당	계
무조건 종합과세			× × ×
조건부 종합과세			× × ×
계	× × ×	× × ×	× × × (A)
출자공동사업자 배당		× × ×	

◆ 종합과세여부의 판단

① 조건에 따른 종합과세 금액

- < 조건1 > 무조건 종합과세 + 조건부 종합과세 = (A) > 2000만원인 경우 : (A)를 종합과세
- < 조건 2> 무조건 종합과세 + 조건부 종합과세 = (A) ≤ 2000만원인 경우 : 무조건 종합과세만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과세대상은 분리과세

②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,000만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

2. 금융소득의 구분

(1) 주요 비과세대상

- 공익신탁의 이익
- 2015년까지 가입한 재형저축의 이자·배당
- 2012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·배당

(2) 무조건 분리과세대상

구분	원천징수세율
① 다음의 장기채권의 이자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㉠ 2012.12.31.까지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 이자 →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분리과세 신청시 분리과세 ㉡ 2013.1.1. 이후 발행된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하는 이자	30%
② 비실명 금융소득	38%, 90%
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	기본세율
④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입찰 법원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	14%
⑤ APT관리사무소등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으로 보는 단	14%

체 외의 단체의 금융소득	
⑥ 선박투자회사,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,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는 각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	
⑦ 각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,000만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	9%
⑧ 각 투자회사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,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	14%
⑦ 투자금액이 5,000만원 이하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서 받은 이자·배당소득	14%
⑧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*	25%

*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

-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서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라 금전으로 받는 배당(주식배당, 중간배당, 현물배당, 분기배당은 제외)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: 9%(조건부 종합과세대상)
- ② 거주자가 위 배당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 : 25%세율로 분리과세
- ③ 적용시기 : 위 규정은 2015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함

(3) 무조건 종합과세

- ① 국외금융소득 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
 - ② 국내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
- * 국외금융소득의 과세방법

구분	과세방법	원천징수세액의 처리방법
①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자가 원천징수한 경우	조건부과세	기납부세액으로 차감
②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경우	종합과세	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

(4) 출자공동사업자 배당

2,000만원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종합과세(원천징수세율 : 25%)

(5)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

(1)~(4)를 제외한 금융소득(원천징수세율 : 14% 단,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%,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은 9%)

3.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

- ▷ 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 계산의 기본원칙
 $2,000\text{만원} \times 14\% + (\text{과세표준} - 2,000\text{만원}) \times \text{기본세율}$
- ▷ 금융소득 구성순서

이자소득	→ G-UP제외대상	→ G-UP대상 배당소득 중	→ 기타의 G-UP대상
	배당소득	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	배당소득

< 참조 > 금융소득 구성순서 및 소득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

G-UP 적용시 구성순서	적용세율	종합소득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
	기본세율	
④ 기타의 G-UP대상 배당소득	14%(9%)	① G-UP 여지 없음× ② 사업소득(이월)결손금 공제×
③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		
② G-UP제외 배당소득		
① 이자소득		